

2006. 9.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 목 :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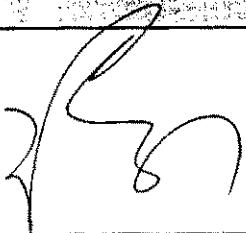
불 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발의자 : 양순경 의원 (성명도날인)

외 2인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양운경		
김명섭		
최수재	최수재 2008. 9. 1.	

##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7
------	------

발의연월일 : 2006. 9.  
발의자 : 양순경 의원외 2인

### 1. 제안이유

2006. 4. 28일자로 지방자치법 41조 제3항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의 의하여 제천시의회의 회의 일수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 제천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한다.
- 제3조(집회일)
  - 제1차 정례회 집회일 : 매년 6월 18일
  - 제2차 정례회 집회일 : 매년 11월 22일
- 제4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 제1차 정례회 :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
  - 제2차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의결 및 부의안건 심의
  - 임시회 : 부의안건 심의, 현장방문 등

###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불임 1.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문 1부. 끝.

##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 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제3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8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

**제4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 방문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2006년 8월 30일까지 의회가 개최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법 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쉬운법령 보기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월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

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말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4.12.2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

[전문개정 1994.3.16]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3.1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의2 (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본조신설 1994.3.16]

#### 제4절 소집과 회기

제38조 (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8.31]

제39조 (임시회) ① 출석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 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개정 1994.3.16, 2006.4.28>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

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6.4.28>

③ 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모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중 간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개회·총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총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 각제 <2005.1.27>

③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4.28>

### 제5절 의장과 부의장

제42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3조 (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44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5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6조 (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47조 (보궐선거) ①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8조 (의장동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제42조 제1항·제46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는 때에는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94.3.16>  
② 제1항의 불신임의 결론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 1994.3.16>  
③ 제2항의 불신임의 결의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개정 1994.3.16>

### 제6절 위원회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2006.4.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1.12.31>

제5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6.4.28]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쉬운법령보기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자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4.1]

제19조의2(운영규정) 별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4.1]

제19조의3(대리출석·답변의 끊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6]

제19조의4(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00.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7.1>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부의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부의안건

③ 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20조(통신임 의결의 통고등)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통신임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자체없이 통고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에는 지방의회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자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7.6, 1999.12.31>

제20조의2 삭제 <2006.6.29>

제20조의3(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21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는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5일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7.6, 1999.12.31>

③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